

학 생 생 활 제 규 정 집

<2026.2.12.>



I	학 생 생 활 규 정
II	학 생 생 활 교 육 규 정
III	학 생 자 치 규 정
IV	기 숙 사 학 생 생 활 규 정
V	관 련 서 식

장대현중고등학교

I

학 생 생 활 규 정



장대현중고등학교

제1장 총칙

학교생활규정은 장대현중고등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며 자유롭고, 생기가 넘치며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흐르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

제1조(명칭 및 범위)

- ① 이 규정은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이라 한다.
- ② 이 규정은 학교생활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 튼튼한 관계성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민주시민, 통일세대 기독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을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 ① 교원, 학교교육 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 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④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협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⑨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⑪ 청소년 미혼모(부)·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⑬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⑭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9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⑯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⑰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 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③ 교권을 존중할 의무
- ④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⑤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 ⑥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⑦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⑧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⑨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 ⑩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 ⑪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8조(생활)

-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9조(예절)

-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 ②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의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 ③ 학교구성원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제10조(교우관계)

- ①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키며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 ②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동급생 및 상·하급생의 물건도 자신의 물건과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진다.

- ③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사용을 생활화하며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언어 사용은 일체 금한다(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는다).
- ④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 폭력은 일체 금하며 상호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이성교제)

- ①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한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④ 교내외 이성교제를 금한다.
- ⑤ 이성문제로 인해 공동체의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4장 용의 복장

제12조(용모)

- ①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과도한 노출 의상이나 선정적인 차림새로 타인 및 공동체에 심리적 불쾌감을 줄 경우 교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파마, 염색, 탈색 등 지나친 머리 형태의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③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제13조(복장)

- ①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일과 중(등교시간~하교시간) 복장은 규격화된 교복 및 학교에서 지정한 활동복으로 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③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학교 지정 활동복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등·하교 때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 ⑥ 이름표와 학생증은 교복을 착용하는 동안 부착해야하며, 교외활동간 학교장의 지침에 따른다.
- ⑦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⑧ 교내외 사복 착용간 지나친 노출이나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교사의 지침에 따른다.
- ⑨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이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4조(용모 및 장신구)

-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③ 고가의 장신구는 교사의 제재가 있을 경우 착용을 금지한다.
- ④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피어싱은 금지한다.
- ⑤ 일과 중 장신구(유색렌즈, 목걸이, 반지, 유색귀걸이, 손톱네일 등)는 금한다.
(단, 개인 자유 활동 시간의 착용은 허용하되, 교사가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신발 및 가방 등)

- ①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②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뽀족한 끝, 금속 장식 등).
-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5장 학교 내 활동

<기본방향>

1.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참된 배움의 가치를 알아 실천하는 생활이 되도록 한다.
2.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16조(등·하교)

- ① 정해진 시간에 등·하교한다.
- ② 합당한 사유(보호자의 요청, 기상이변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교내외출일지를 작성후 외출을 실시하며, 돌아오면 즉시 해당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수업시간)

- ①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해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 ③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④ 수업시간에 졸지 않으며, 수업과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⑤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학습 기자재를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한다.
- ⑥ 수업시간에 지급되는 교과서 및 수업 중 나눠주는 유인물을 잘 관리한다.
- ⑦ 수업시간에 교내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지정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일체의 개인적인 내용은 전자기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 ⑧ 수업시간에 사용한 기자재 및 도서는 개인소유물이 아니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 및 보관하도록 한다.

제19조(수업 외 여가시간)

- ①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 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⑤ 특별실(약속의 땅, 도서실, 컴퓨터실, 음악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해당실의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 ⑤ 특별실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약속의땅	컴퓨터실	도서실	음악실
이용시간	~ 21:00	~ 21:30	~ 21:30	~ 20:30

※이용 시간 외 특별실을 이용할 경우 담임교사 또는 사감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학교 시설물 이용 및 관리)

- ①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은 공동시설물이므로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교내 시설물(에어컨, 컴퓨터, 태블릿, 크롬북 등) 이용시 이용지침을 준비하며 교사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도록 한다.
- ④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⑤ 교내의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 ⑥ 주어진 담당구역 청소를 성실히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환경 및 청소)

- 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봉사활동)

-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 ②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교내 활동)

- ① 담당 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일과시간 이외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2.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3.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이용대장 작성)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24조(학교 외 활동)

-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학기 중 교외 현장체험학습 실시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 ⑥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본드·가스·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 ⑧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정보 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성희롱·성매매·음란물 유포·비방(악플)·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6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① 학교 생활간 개인 정보통신기기(컴퓨터·휴대전화 등)는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필요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다.
- ②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컴퓨터·태블릿·크롬북 등)는 관리지침(대여일지 작성 등)에 맞게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③ 어학학습 및 음악 청취를 위한 개인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교내에서 스마트워치는 시간 확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데이터, 와이파이 사용금지)
- 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8장 환경과 안전

제27조(음식물)

-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공동으로 학습하는 공간에서는 섭취 제한)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향이 강한 음식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 ③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체육실 내 학생용 냉장고에 자신의 이름을 붙혀 보관하도록 하며, 타인의 식품에 손을 대는 행위는 금한다.
- ④ 체육실 내 냉장고는 학생자치회에서 관리하며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⑤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⑥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가져가야 한다.

제28조(청결활동) 교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분리수거함)에 분류 배출한다.

- ① 교내 분리수거(플라스틱, 페트병, 화장실 쓰레기, 일반 쓰레기, 비닐류, 종이류, 병류 등) 기준에 맞게 쓰레기를 분리 배출한다.
- ② 음식물 쓰레기는 식사당번에 의해 정해진 날짜에 배출한다.
- ③ 교내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한다.

제29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전기머리인두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필요시 학교장의 허락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 주어야 한다.
6.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 ③ 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 ④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등 재난안전 유의
- ⑥ 실험·실습, 취업 준비 등 직업안전 유의
-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9장 규정의 개정

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관련 교원(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및 학생·학부모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32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 ① 제·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 ④ 개정 시안 수립
- ⑤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33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이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교육(선도) 규정’, ‘학생자치규정’, ‘기숙사생활규정’, 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원칙에 따른다.

-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 1. 학생: 학급·학생회의·설문조사 등
 - 2. 부모 등 보호자: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3. 교원: 부서별·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적용)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학 생 생 활 교 육 규 정



장대현중고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 ①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

제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 이외 학생생활제규정 「학생생활규정」 제4장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5조제1호~제8조제3호 내용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학생생활규정」 제4장 용의복장

제12조(용모)

- ①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과도한 노출 의상이나 선정적인 차림새로 타인 및 공동체에 심리적 불쾌감을 줄 경우 교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파마, 염색, 탈색 등 지나친 머리 형태의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③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제13조(복장)

- ①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일과 중(등교시간~하교시간) 복장은 규격화된 교복 및 학교에서 지정한 활동복으로 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③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등·하교 때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 ⑥ 이름표와 학생증은 교복을 착용하는 동안 부착해야하며, 교외활동간에는 학교장의 지침에 따른다.
- ⑦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⑧ 교내외 사복 착용간 지나친 노출이나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 ⑨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이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4조(용모 및 장신구)

-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③ 고가의 장신구는 교사의 제재가 있을 경우 착용을 금지한다.
- ④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피어싱을 금지한다.
- ⑤ 일과 중 장신구(유색렌즈, 목걸이, 반지, 유색귀걸이, 손톱네일 등)는 금한다.
(단, 개인 자유 활동 시간의 착용은 허용하되, 교사가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신발 및 가방 등)

- ①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 ②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뽕족한 끝, 금속 장식 등).
-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6조(교실 밖 분리 방법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의 분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음식물반입, 엎드려자세 행위 등)	교실 앞문 밖 복도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교실 문 개방)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복도에 학생은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실문을 열고 수업)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반항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특별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제7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① 학생은 다음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순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1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2	흡연 관련물 (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3	주류
4	향정신성 의약품 (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6	흉기(공구류·칼 등)

순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음식물
2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3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4	해당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단,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은 해당교사의 필요에 의해 허락 및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 ③ 교원이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교원이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사양, 지도사유를 ‘물품 분리보관 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 ⑦ 물품소지·사용제한 및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제규정 「학생생활규정」제8장제29조에 따라 지도한다.

「학생생활규정」 제8장 환경과 안전 제29조

제29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②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도박물품(화투·카드 등), 흉기(공구류·칼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6.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 가. 담당교사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 다. 담당교사는 해당 학생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①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제7장제26조와 「기숙사학생생활규정」제1장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학생생활규정」 제7장 정보통신

제26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① 학교 생활간 개인 정보통신기기(컴퓨터·휴대전화 등)는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필요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다.
- ②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컴퓨터·태블릿·크롬북 등)는 관리지침(대여일지 작성 등)에 맞게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③ 어학학습 및 음악 청취를 위한 개인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기숙사학생생활규정」 제1장 기숙사 학생생활규정 제6조 통신기기

제6조(통신기기) 교내 스마트기기 반입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1. 기숙사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사용은 금한다.

※휴대전화 허용되는 경우

- 금요일 일과 이후부터 토요일 20시까지
-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귀가 후부터 ~ 20:00까지
- 공휴일
- 외부활동, 체험활동간 학교장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

2. mp3, pmp 등의 통신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며 사감교사의 통제를 받아 사용한다.
3. 개인 노트북은 기숙사 반입을 금지한다.

-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이성교제)

- ① 이성교제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성교제의 대상은 교내 학생뿐만 아니라 교외 학생도 포함한다.)
- ②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도한다.

	절차	사 안	생활지도
1	사안 발생	• 이성 간의 우정을 넘어선 애정행위 (스킨십 등) 목격 • 이성 간의 관계에서 타학생에 대한 배타적 행위 목격 • 이성 간의 관계에 따른 공동체 구성원의 불편 호소	• 관련학생에 대한 이성교제 여부 확인 상담(해당교사)
2	1차 경고	• 교사의 사안발생 조치에도 “1”의 사안 지속 (교사의 지도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 관련 건에 대한 1차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1차 경고장 발급(학생), 학부모에게 통보(유선) • 공동체 구성원에게 관련 사항 설명(전체 또는 반별)
3	2차 경고	• 1차 경고에도 “1”의 사안 지속 (교사의 지도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 관련 건에 대한 2차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2차 경고장 발급(학생) • 관련 학생 심층상담(성별을 고려하여 상담교사 배정) • 학부모 학교 출석 통보(관련건에 대한 학교 조치 설명) • 공동체 구성원에게 관련 사항 설명(전체 또는 반별)
4	징계	• 2차 경고에도 “1”의 사안 지속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0조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부

제10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학생의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1조(구성 및 의결)

-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를 둔다.
- ② 이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부장, 학생회담당교사, 교무부장, 각부서 부장교사, 학년부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 ③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 ④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와 징계 이후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회복위원회’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재심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위원 2/3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사안설명)

- ① 각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⑤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시행 절차

처 리 절 차	〈담당〉	주 요 처 리 내 용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해당교사	○ 사실 확인서 작성<서식1-1> 필요시 학생의견서<서식1-2>, 목격자 확인서<서식1-3> 작성 ○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업무담당 교사	○ 학교장에 사안 보고<서식2> [관리자(교감/교장)의 사안보고 작성 요청 시] ○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 관련 사안 통지 ※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관리자 (교장,교감)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전자문서) ※ 단, 전결위임규정에 의해 담당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생활교육 담당부서에서 결재를 통해 조치 시행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 노력 등 추가 자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지	생활지도 업무담당 교사 해당교사	○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유선 통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하되, 반드시 우편(내용 증명)으로 발송 ○ 선도위원회 위원 대상 회의 개최 통지 -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유선 통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절차]	생활지도 업무담당 교사 해당교사	○ 개최 ○ 사안보고(사안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당사자 진술 - 학생에게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 전결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소위원회(학년부 소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교사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 징계유형, 시행방법, 기간, 장소를 회의록에 명시 ○ 폐회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생활지도 업무담당 교사 해당교사	○ 생활교육위원회 결과 및 조치이행계획 결재(회의록 등)<서식3> ※ 학부모가 공개를 원할 경우 실명 삭제 후 공개(단, 목격자 진술서 등 그 외의 서류는 비공개) / 조치이행에 의견이 있으실 의견서 제출<서식4> ○ 학부모에게 조치결과를 반드시 서면 통지 -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유선 통지 ※ 재심청구(통지 시 명기사항) 반드시 안내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시행 '공고문' 부착 지양 -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게시판 게시(단, 이름 및 사안에 대한 내용 고려)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생활지도 업무담당 교사 해당교사	○ 징계 조치 시행<서식6>, 징계 대장 기록<서식9>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회복적 성찰문 작성<서식8>

※징계 절차 후 회복위원회는 기존 학교생활지도규정에 절차에 맞춰 운영

제4장 징계

<기본원칙>

1. 학생 징계는 공동체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본교 교육이념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 및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한다.
3.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14조(적용 및 종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학생이 등교한 후 생활교육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교내 봉사활동 실시
2. 사회봉사: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복민실 재단,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3. 특별교육이수: 교육청에서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 위탁교육 실시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일 경우 강제전학 처분)

제15조(징계의 방법) 각 징계 조치는 다음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 교내 환경 미화 활동, 식물(텃밭)가꾸기 등
 2. 교재 교구 정비
 3. 권장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 좋은 시 암송 등
 4. 상담(교육)교사 상담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
-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의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위탁기관은 상담전문가·청소년 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으며,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징계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을 계약한 학교 교육과정 이수

※ 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 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삽입하여 기재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고등학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는 징계 사안에 따라 학생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3. 학교의 교육이념과 철학에 위배되는 학생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 ⑥ 퇴학처분(강제전학) 전 조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학생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사유 및 기준) 징계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징계사유	징계기준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제 1 조 준 법	1	지도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취하는 학생	○	○	○	○
	2	품행이 불량하여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학교장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3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4	교육활동 중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사의 지시를 어긴 학생 / 벌점 과다	○	○	○	○
	5	학교 단체 행사 및 활동에 불참한 학생	○	○		
	6	수업준비, 청소, 주변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7	장난으로 인한 학교 기물(도서, 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학교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도 포함) ※ 변상조치	○			
	8	경찰서에 연행, 훈방되거나 비행으로 학교장에게 통보된 학생		○	○	○
	9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10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1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13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14	학교장의 허가 없이 각종 매체,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제 2 조 수 업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육설)	○	○	○	
	16	교사의 교수권 또는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18	고사 중 부정행위를 주도했거나 방조·협조한 학생	○	○	○	○
	19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20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1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제 3 조 근 태	22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기숙사, 교실로 반입한 학생	○	○	○	○
	23	외출, 외박규정을 어긴 학생	○	○	○	
	24	학교를 무단이탈 한 학생	○	○	○	○
	25	무단이탈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무단이탈 3회 이상)	○	○	○	○
	26	무단이탈(외출,외박 미복귀 포함) 10일 이상인 학생		○	○	○

구분	항	징계사유	징계기준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제 4 조 약 물	27	흡연 또는 음주, 향정신성 의약품, 유해성 약물을 복용한 학생	○	○	○	○
	28	흡연 또는 음주, 향정신성 의약품, 유해성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학생	○	○	○	○
	29	본드, 술,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성 마약류 등을 소지, 유포 또는 사용한 학생		○	○	○
제 5 조 금 품	30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각출한 학생		○	○	○
	31	공공기물을 파손, 절도, 절취, 사취하거나 이에 동참한 학생	○	○	○	○
	32	타인의 물건을 파손, 강탈, 갈취하거나 이에 동참한 학생		○	○	○
제 6 조 집 단 행 위	33	불법집회 또는 불량써클(×-계보 등)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한 학생		○	○	○
	3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6	학생의 징계건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협조한 학생	○	○	○	○
	37	단체행동 및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제 7 조 퇴 폐 행 위	38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학생신분 및 네티켓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39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콘텐츠, 물건 등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사취한 학생	○	○	○	○
	40	도박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	○	○	○	
	41	상습적으로 도박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		○	○	○
	4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43	불건전한 서적, 파일(file) 및 기타 매체물을 소지, 유포, 시청, 탐독한 학생	○	○	○	
	44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45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제 8 조 기 타	46	불법과외수업을 받은 학생			○	○
	47	동일 학년에 동일 사안으로 2회 이상 지도를 받는 학생(가중 처벌)		○	○	○
	48	징계 기준 외의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	○	○	○

제17조(징계심의절차)

- ① 징계위원회는 생활교육업무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④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 ⑤ 징계위원회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진행한다.
 1. 개회
 2. 부위원장의 사안 설명
 3. 부위원장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징계 조치 등 심의·의결
- ⑥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 및 해당교사의 의견과 생활교육업무담당 부장 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징계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단, 학교폭력에 의한 처벌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8조(징계위원회 운영 절차)

- ①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구성은 교장, 교감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 개최는 사안에 대한 교사 2인 이상의 제청 및 교장의 지시가 있을 시 개최한다.
 3. 징계위원회의 목적은 관련 사안에 대한 원활한 해결과 차후 재발 방지에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사안 관련자, 참고인 모두 참석하여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5. 최종 판결은 징계위원의 의견을 모은 후 위원장(학교장)이 결정한다.
 6. 징계위원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가. 개회선언
 - 나. 출석확인: 징계위원, 사안관련자(학생, 참고인 등)
 - 다. 사안확인: 관련 사안 진위 여부 확인 → 규정확인
 - 라. 진술: 사안과 관련된 진술을 통한 사안의 진위 여부 재차확인 → 규정확인
 - 마. 징계확정: 징계위원 심의 → 학교장 승인
 - 바. 징계시행

② 회복위원회

1. 회복위원회 구성은 교장, 교감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2. 징계 종료 후 3일 이내에 회복위원회를 개최한다.
3. 회복위원회의 목적은 징계 과정에 대한 확인과 개인,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
4. 회복위원회는 징계에 성실히 임했으며, 반성 및 차후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5. 회복위원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개회선언

나. 출석확인: 회복위원, 징계받은 학생

다. 징계처분이행 확인: 사회봉사일지, 반성문 등 징계 처분 자료 확인

라. 진술: 징계를 통한 느낀 점, 반성한 점, 차후 학교생활에 개선의지 확인

마. 조언: 회복을 위한 회복위원의 조언

바. 마무리

제19조(조치 결과 통지)

- 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징계 조치 결과를 통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징계 조치 내용
 2.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3.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기간
 4. 징계 기간 중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학교 전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한다(단, 관련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여 게시한다).

제20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 거부 시 사유 반드시 기재)
-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징계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의 신청은 1회만 인정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22조(징계의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제23조(징계의 가중)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 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5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리대장 및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리대장 및 회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출결 처리)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7조(적용)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 제9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생생활교육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 2024년 12월 11일(금) 제2장 생활지도 제9조(이성교제) 신설

Ⅲ

학 생 자 치 규 정



장대현중고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생자치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 생 회

제4조(명칭) 이회는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5조(회원 및 구성)

- ① 이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②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이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① 이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이회의 대표(학생회장·학생부회장·서기·각부서 부장 등)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명시된 ‘업무·권한·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활동) 이회의 회원은 법령에 따른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지원사항) 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행사, 학생 연구 활동 및 학교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2.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3.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4. 문화·예술·체육·취미·모금 활동
5. 각종 봉사 활동
6.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7.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8.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사 연대(위원회·협의회·행사참여 등) 활동

9.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제9조(승인) 이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교장이 승인을 유보, 거부할 경우 해당 사유를 신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① 이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의, 대의원회(학생임원회), 학급회, 부서장회를 둔다.

② 이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 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② 학생회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구성원은 징계 기록이 있으면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전교학생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서기)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학급임원은 입후보 가능).

1. 적용기간: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징계 기록

2. 징계수준: 적용 기간 중에 처분받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③ 학생자문회의에서 입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구성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제12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은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하고, 서기 1인은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지명한다.

② 각 부의 부장 1인, 부원은 각 부의 특성을 맞춰 학생회의를 통해 선발하도록 한다.

③ 학생회 임원과 각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학생회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단, 해당 부서는 학교 상황에 따라 통합 운영 및 신설, 미개설될 수 있다)

부 서	활동 사항
학예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방송선교부	교내방송, 후원활동(کمپ션), 신문철 및 게시판 정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	학교 내외의 환경 미화 및 환경보호에 관한 제반 사항
도서부	도서실 업무 및 도서에 관한 사항
영상편집부	영상제작, 컴퓨터실 이용, 학생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과 제반 행정을 지원한다.

④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3장 학 생 회 의

제15조(구성) 학생회의의 구성원은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6조(권한) 학생회의에서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사항 토의 및 의결

제17조(의장) 학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및 소집) 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 ① 정기회의는 월 1회로 한다.
- ② 임시회의는 중요사안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나,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담당교사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19조(회의진행) 학생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생활계획 반성
- 4. 생활계획 수립 및 실천사항
- 5. 각 부서별 생활계획 반성 및 수립
- 6. 건의사항
- 7. 기타협의
- 8. 교가제창
- 9. 폐회선언

제4장 학생자문위원회

제20조(목적) 학생회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구성 및 운영)

- ①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사,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생회 각 부에 책임자문위원(부서별 담당교사)을 두어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책임) 학생자문위원은 학생자치활동 자문 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한다.

- ① 이 규정 제20조(목적)에 따라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 ② 학생회장(학급반장)이 요청하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에 성실히 임할 책임
- ③ 학생회·학급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자유로운 의사표시,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책임
- ④ 학급회의, 학생회의가 정해진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책임

제23조(기능)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의 의결 및 건의 사항
3.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24조(목적)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선거권)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입후보자 자격)

-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 ② 이 규정 11조에 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춘 학생이어야 한다.
- ③ 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제27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선거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기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이 회의 회원인 재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 ② 학생회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선거의 시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3월 중에 실시한다.

제29조(임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선출)

제30조(입후보자 등록)

- ①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31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충분한 선거운동기간(3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32조(투표 및 개표)

- ① 투표는 투표함을 이용하여 입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
- ②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33조(당선인)

- ① 위원회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 ②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1차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 2인을 선출한 후, 2차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 ④ 위 ‘①,②,③’ 항의 과반수 득표자는 투표자수의 1/2 이상의 득표를 의미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 적용에 있어 기권표가 있을 경우 기권표를 제외한 과반수 정원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기권표를 제외한 과반수정원=정원-기권표)
- ⑤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⑥ 서기는 당선된 회장·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34조(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학생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학생
3.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학생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학생
5.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학생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학생

제35조(기타) 이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36조(지출)

- ① 학생회의 경비는 학교예산 중 학생자치활동비로 지출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예산을 지출할 때는 학생회장과 담당지도 교사의 협의하여 학교장 또는 교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37조(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 집행 및 결산)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9조(적용)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 제9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생자치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V

기숙사 학생 생활 규정



장대현중고등학교

제1장 기숙사 학생생활규정

제1조(목적) 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도록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정착하여 질서 있고, 예의 바른 통일세대 기독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사시 준비물) 입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준비한다.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2. 의류: 생활 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4. 학습자료: 참고서, 노트,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 최소화
6. 개인용 실내화: 학교용으로도 사용 가능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서랍장

제3조(생활 수칙)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전과 위생을 지키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2.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전기와 물을 아껴쓰고 함께 이용하는 기기들은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5. 기숙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감교사의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6. 외부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이나 학교 측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사감교사 등에게 알려야 한다.
7.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 체질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시 사감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8.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9. 기숙사 출입 시에는 사감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10.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 의류 등에서 악취·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감교사 및 담당교사에게 알린다.
12. 음주, 흡연을 금지하며, 약물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13. 촛불 점등 및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14. 호실의 공용물품은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
15.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
16.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않으며(비누, 칫솔, 과일, 음식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화장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될 경우 사감교사에게 보고 한다.)
17.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전열기기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꺼짐 상태를 확인한다.

18. 자기 호실이 아닌 호실에 허락없이 출입해서는 안된다.
19. 호실에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20. 현금 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21.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2.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이나 곤충 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
23. 성냥, 라이터,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
24. 기숙사생활 중 카드,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는 하지 않는다.
25.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에 게시되어 있는 비상대피로를 통해 이동한다.

기숙사 생활수칙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감교사 및 담당교사는 경중과 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학교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일과표) 기숙사 표준일과표는 다음과 같다.

시 간	평 일	토요일(공휴일)	일요일
06:30~07:00	기상, 세면	기 상	
07:00~07:30	인원점검 / 산 책		
07:30~07:50	아침식사(자율)		
07:50~08:25	퇴실 (등교) / 기숙사청소(이불)	휴식시간	휴식시간
08:30~12:20	학교생활	오전활동	
12:30~13:30	점심시간	점심식사(자율)	교 회
13:30~17:00	학교생활	오후활동	
17:00~17:30	저녁식사(자율) / 기숙사 입실	저녁식사(자율)	저녁식사(자율) 휴식시간
17:30~19:00	여 가 활 동	휴식시간	
19:40~20:30	전체모임	자기개발시간	자기개발시간
20:30~21:30	자기개발		
21:30~22:30	기숙사 청소/취침점호		
22:30~	취침 및 추가학습		

1. 기상 후 7시까지 산책할 수 있는 복장으로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2. 모든 일과는 종소리 및 선생님의 방송에 따르며 집합시간 5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3. 아침산책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날씨 등의 제한사유가 있을 시 사감교사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산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약속의 땅에서 별도의 아침 모임을 주관한다.)
4. 학교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을 금한다.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 허락시 가능)
5. 기숙사 내에서는 정숙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행동하도록 한다.

6. 물을 아껴 쓴다. (양치를 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고 난 후 잘 잠그도록 한다.)
7. 화장(샤워)실 사용 후 깔끔하게 뒷정리를 한다.
(머리카락 줍기,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두기, 용변 후 물 내리기 등)
8. 기숙사를 나올 경우 전열기구 코드와 불을 반드시 끄고 나온다.
9. 방과 후 수업활동은 사감교사의 통제를 받아 도서실과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해당실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10. 자기개발시간은 정숙한 상태에서 TV 시청, 컴퓨터실 이용 및 개인 학습활동을 한다.
(단, 사감교사는 TV시청, 컴퓨터실 이용 및 개인 취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1. 21:00 이후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한다.
12. 기숙사 청소시간에는 전체 방원이 협력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13. 취침 소등 이후 불을 켜거나, 이동하는 행동은 금한다.
14. 취침 전 방장의 인도로 방원들이 함께 모여 말씀 보고,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15. 야간추가학습신청자의 경우 오후 5시전에 담임교사에게 추가학습 확인을 받고, 사감교사(당직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야간 자율학습은 24시까지 실시하며 시험기간에는 사감교사(당직교사)의 승인을 얻어 새벽1시까지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다.
17. 각 방장은 방원을 잘 돌보며,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18. 남학생은 여학생 기숙사에, 여학생은 남학생 기숙사에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19. 기숙사 생활간 상별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개인별, 방별 상별점을 부여한다.
20. 기숙사 생활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21. 사감교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행복한 기숙사 생활이 되도록 한다.

제5조(시설 이용) 기숙사 내 시설 이용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숙사내 시설 이용 시간

구 분	세탁실	음악실	컴퓨터실	운동장
평일	17:00~22:00	17:00~20:30	20:30~21:30	17:00~19:00
주말/공휴일	09:00~21:00	09:00~20:30	지정된시간	09:00~19:00

② 약속의 땅 컴퓨터 사용은 사감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세탁실

1. 세탁실 이용시 본인의 세재를 사용하여 세탁 및 건조 한다.
2. 세탁기는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된 지정된 세탁기를 사용한다.
3. 건조기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④ 화장실(샤워실)

1. 물을 아껴쓰며, 타인을 배려하여 오랜시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온수공급 및 기타 화장(샤워)실 사용이 제한될 시 사감교사의 통제에 따른다.

⑤ 운동장

1. 운동장 이용간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2. 체육기자재를 사용 후 정리정돈을 잘한다. (사용한 체육기자재는 제자리에 정리)

⑥ 컴퓨터실

1. 지정된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교사의 허락 없이 시간과 자리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3.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접근을 피한다. (이용시 담당교사의 제재를 받는다.)
5. 유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이용 후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6. 개인 자료는 개인용 USB를 사용한다.
7. 교육적으로 유해하다 판단되는 사이트에 접속은 담당교사가 통제한다.
8.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제6조(통신기기) 교내 스마트기기 반입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1. 기숙사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사용은 금한다.

※휴대전화 허용되는 경우

- 금요일 일과 이후부터 토요일 20시까지
-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귀가 후부터 ~ 20:00까지
- 공휴일
- 외부활동, 체험활동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2. mp3, pmp 등의 통신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며 사감교사의 통제를 받아 사용한다.
3. 노트북은 기숙사 반입을 금지한다.

제7조(식사당번제)

1. 조를 편성하여 순환하며 배식 준비/정리, 설거지 조를 운영한다.
2. 조리한 음식을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배식 정리는 식사 후 뒷정리를 말하며 테이블 및 바닥 정리를 포함한다.
4. 당번 조는 주말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식당 정리는 실시한다.
5. 저녁 간식 후 정리는 당번 조가 실시한다.

제8조(외출과 외박)

<공통>

1. 교내/주말외출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일
시간	일과 종료 후(사감교사 허락) ~ 방과 후 학습전	09:00 ~ 20:00	오후예배 복귀 후 ~ 20:00

2. 교내 및 주말외출은 매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외출 장소를 허위로 기재, 복귀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사감교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위 “3”의 항목이 반복되는 학생은 해당교사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특별 외출(박)은 학부모, 학생의 요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6. 외출(박) 간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와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7. 외출(박) 복귀 시 복장 검사를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사감교사는 확인한다.
8. 외출(박) 이외의 학부모 학교 방문(면회)은 사전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9. 외출(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임교사 및 사감교사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
10. 외출(박)은 학교 학사운영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11. 외출(박)시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12. 외출(박)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담임교사(학교)에 연락 한다.
13. 주일(일요일) 교내외출은 장대현교회 예배를 마치고 학교 복귀 후 실시할 수 있다.
(단,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교내외출>

1. 교내외출은 학교에서 정한 출타지역 내에서의 외출을 의미한다.
2. 교내외출 지역은 신호동, 명지오션시티, 명지 국제신도시 (대중교통으로 20분내외 거리)로 한다. (단, 평일 교내외출은 신호동으로 제한한다.)
3. 교내외출 시 교내외출일지에 출발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4. 교내외출 시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에는 휴대전화가 지급되지 않으며, 주말에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금, 토 휴대전화 지급)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평일에도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지급될 수 있다.)
5. 교내외출 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지정한 이외의 지역으로 외출을 실시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 사감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말외출>

1. 주말외출은 교내외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출타하는 외출을 의미한다.
2. 주말외출 전 주말외출계획서를 외출 하루 전에 작성하여 사감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말외출 시 교내외출일지에 출타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4. 주말외출 시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주말간 휴대전화 사용 기준)
5. 주말외출자의 복귀시간은 20시(오후 8시)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귀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사감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외박>

1. 정기외박은 학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외박을 의미한다.
2. 정기외박(가정학습)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오후)~월요일로 한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3. 정기외박(가정학습) 시간은 출발당일 14:00(외박준비 완료 되는 시각) ~ 도착당일 20:00로 한다. (단, 출타거리, 계절을 고려하여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4. 타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귀가를 위해 2주전(연휴기간이 포함될 경우 1달 전) 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는 안내한다.

제9조(혹서기 및 혹한기)

1. 실외온도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산책은 실시하지 않는다.
2. 겨울철 기숙사 온도는 20~25℃로 유지하며 20℃이하로 떨어지면 기숙사 난방을 가동한다.
3. 기숙사 냉난방기 사용은 사감교사가 통제한다.

제2장 기숙사 상·별점 제도

<기본원칙>

1. 상별점은 질서있고 안전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감 교사의 재량에 의해 상별점 부과 대신 기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별점을 받은 학생은 해당교사로부터 상별점 부과 용지(교무실 보관용, 학생 보관용)을 받으며, 해당 상별점이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신청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매월 결산된 상별점을 종합하여 학기말 학교생활 우수학생을 선발한다.

<상별점 부과 기준>

1. 상별점은 한 달에 한 번 정산하여 없어진다.
2. 한 학기동안 받은 상별점은 한 학기 총 상별점으로 누적되어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에 반영된다.
3. 사감은 매일 저녁점호 시간에 개인 상별점 현황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상점 항목>

1. 공동체 상점 (개별점수로 부여)

항목	점수	내용
공동생활	2	기숙사 정리 정돈을 잘했을 시
	3	각 방별 할당 과제 잘 수행 했을 시
		방 인원 전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였을 시

2. 개인 상점

항목	점수	내용
선행	1	선행 및 봉사활동 (교실/도서관/컴퓨터실 뒷정리, 행사도우미 등)
	2	긴급 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대처
규칙준수	1	담당구역 및 기숙사 청소 청결
		기숙사 공동생활을 준수
교사재량	1~5	학교생활 중 선생님이 모범학생에게 상점을 부여

<별점 항목>

1. 공동체 별점 (개별점수로 부여)

항목	점수	내용
공동생활	2	취침시간 후 소란행위, 소등하지 않을 경우
		아침등교 전 기숙사, 기숙사 방 청소 미흡
	3	다른 방에서 취침 (공동책임)
		본인 침대 외 다른 침대 사용(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행위 등)
		보고 없이 음식물 반입
		※쓰레기 투기, 침·가래 뱉기, 개인빨래, 기물파손 등 기숙사생활규칙 위반 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학생 전체에 별점을 부과함.
강력징계 행위		※흡연/절도/폭력/음주/풍기문란/무단외박/무단외출/무단이탈/컴퓨터실에서 음란물 시청/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 출입시,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사 출입시/사감에게 대드는 행위 등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2. 개인별 별점

항목	점수	내용
교사재량	1~5	학교생활 중 선생님이 규칙 위반 한 학생에게 별점을 부여
공동생활 방해 및 규칙위반	1	실내 소란, 쓰레기 투기, 침·가래 뱉기, 개인빨래, 방 정리 미흡 등
		등교시간 위반(수업 5분전 입실)
		규정된 시간 외 기숙사 출입
		명찰 미착용
	2	아침산책 불참, 명찰분실
		외출, 외박 시 입사시간 위반(사정이 있을 경우 제외)
	3	사행성 놀이(돈을 걸고 하는 게임)
		수업시간 기숙사 출입
		저녁점호 불참
	5	수업시간 기숙사 무단 잔류
야간자율 학습	1	야간자율학습 시간 미준수(19:00)
		물, 사탕 외 다른 음식물 반입
	2	다른 학생의 학습 방해(잡담, 소란스런 행위 등)

전체모임	1	전체모임 시간 미준수(19:40) 교재 미지참
	2	학습태도 불량(잠자기, 잤답, 불량한 태도)
컴퓨터실 사용	2	컴퓨터실 이용 시간 위반 및 보고 없이 좌석 변경 컴퓨터실 내 음식물 반입 컴퓨터실 사용 후 정리 미흡 악성프로그램 사용(컴퓨터 사용 시 주의해서 사용할 것) 컴퓨터실 추가적 사용 시 허위보고
	3	컴퓨터실 기물파손과 낙서
세탁실 사용	1	정해진 시간 외 사용
특별실 사용	1	정해진 시간 외 이용
태도불량	5	사감의 훈육 시 태도 불량 및 지시사항 불이행
무단이탈	3	방과후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보고 없이 단독행위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1	휴대전화 반납시간 위반
	2	학습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3	기숙사 규정에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
	※휴대전화 미반납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상별점 포상 및 처벌>

1. 학기별 상별점을 합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1명에게 기숙사생활우수상을 수여한다.
2. 상별점누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 ① 벌점 5점: 교내식당봉사
 - ② 벌점 10점: 컴퓨터사용 15일금지
 - ③ 벌점 15점: 컴퓨터사용 30일금지
 - ④ 벌점 20점: 휴대전화사용 30일금지
 - ⑤ 벌점 25점 · 강력징계행위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제3장 규정의 개정

제10조(적용)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 제9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숙사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V

관 련 서 식



장대현중고등학교

II. 학생 생활교육 규정

제2장 생활지도

1.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_____	1
2. 분리지도대장	_____	2
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_____	3
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_____	4
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_____	5
6. 물품 폐기 확인서	_____	6
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_____	7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1. 사실 확인서	_____	8
2. 학생 의견서	_____	9
3. 목격자 확인서	_____	10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_____	11
5.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_____	12
6. 의견서	_____	13
7. 조치결정 통지서	_____	14
8.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_____	15
9. 경고장	_____	16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장대현중고등학교장 귀하

분리 지도 대장

<장대현중고등학교>

일자	2023. 11. 1.(수)		확인(서명)	특별실 담당자
	교시	수업담당교사		
내용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장○○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5/1, 7/5)
특이 사항	1. 10101 장○○.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보호자님께!

장대현중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51-974-0320

20 년 월 일

장대현중고등학교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 호 자 성 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대현중고등학교장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대현중고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장대현중고등학교장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대현중고등학교장 귀하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실 확인서

[illegible]

학생 의견서

1	성명		학년		반		성별	남 / 여
2	사안에 대한 의견	위반 행위 인정 여부		예)인정 / 부인				
		행위 내용		예)도박, 절도, 시험 중 부정행위 등				
		관련 학생						
		발생일시 · 기간 · 횟수						
		발생장소						
		발생이유						
3	구체적 의견							
4	증거자료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목격자 확인서

1	학생		성명		학년		반			
	교직원				담당업무					
2	사안에 대한 의견		관련학생							
			목격한 행위 내용							
			목격한 행위 발생 일시 · 기간 · 횟수							
			목격한 장소							
3	구체적 설명 및 의견									
4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1	성명		학년		반		성별	남 / 여
2	행위 내용							
3	관련규정							
4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위반여부						
		이유						
5	참고사항							
6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장대현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 학생에 대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울 때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의견 진술 및 의견서 작성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최일시						
개최장소						
관련학생	성명		학년		반	
개최사유	위반 행위 내용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장대현중고등학교장

의견서

관련학생	성명		학년		반	
학부모 (보호자)	성명		관련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서명)

조치 결정 통지서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 제10조 ~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조치대상학생	성명	학년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조치결정 이유			
불복절차	○ 본 조치결정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2)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 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제20조)		
20 년 월 일 장대현중고등학교장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본인	
				휴대전화		학부모 (보호자)	
	주소						
학생	성명		소속	장대현중고등학교		학년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방법		년 월 일	
재심의 신청 취지							
재심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인) 장대현중고등학교장 귀하							

경 고 장 (○차)

성 명		생년월일	
학 년		반	
경고제목	이성교제 관련건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주의 경고		
경고근거	II.학생생활교육규정 제2장 생활지도 제9조 이성교제		
경고사유	위 학생은 이성친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 간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교사의 수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본교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속된 불편함을 초래함.		
비 고	1차, 2차 경고장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본 경고장은 장대현중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급함.

20 년 월 일

학교장 혹은 담임교사 _____ (인)

장대현중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46759]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사로 76번길 71 경삼빌딩
장대현중고등학교**

TEL. 051) 974-0320~1 FAX. 051) 974-0773